

Q

저는 토목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현장은 대부분 장비(덤프, 도저 등)들로 운영되고 있는데 운전원들이 점심식사 후 밀려오는 졸음을 토로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긴 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껌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덤프차 기사들을 대상으로 껌을 제공해도 되는지, 제공해도 된다면 '껌' 구입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건설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제7조(사용기준)별표2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공사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사업장 안전진단비,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건강관리비 등의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동 규정에서 사용가능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와 같이 장비 운전자의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껌' 구입비용은 노동부 고시의 사용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해당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그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이나 자체 안전보건 행사시 기념품 및 포상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고층아파트 건립시 사용하고 있는 A.C.S(Auto Climbing System, 페리, 도카)를 사용하여 상층에 갱폼으로 거꾸집을 설치·탈형하고 하층에서 건축작업을 하며, 각층에 낙하물 방지를 위해 벽면과 발판으로 방호조치하였습니다. 만일에 대비하여 A.C.S 발판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여 따라 올라가고, 최하단 10m 이내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여 하부 통행자에 대해 조치하였다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5조에 합당한지 문의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에 관한 규칙 제456조(낙하 등에 의한 위험방지)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하물 방지망의 설치여부는 갱폼 등 공법의 종류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진행 또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 공사현장의 경우도 물체의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ACS(페리, 도카)발판하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 올라가고 최하단 10m 이내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여 하부 통행자에 대하여 완벽하게 낙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면 방호조치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저희는 공사금액 2,800억, 공정을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의 건설현장으로, 3명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의 내용에 따르면, 공사금액 800억 이상인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 2인을 선임해야 하며,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매 700억원 추가시 1인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전관리자 3명이 선임된 저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모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안전관리자 선임이 완료되는 기준은 공사 시작 후 및 종료 전 각 15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여기서 공사기간은 공사착공 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공사를 직접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와 같이 현장 사정이나 필요에 의해 위 완화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적 선임 기준에 따라 수명의 안전관리자 (공사금액 800억원을 기준으로 700억원 이상(상시 근로자수 600인 이상) 추가될 때마다 1인 추가를 동시에 선임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를 하였고 실제 현장에 투입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인건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 인건비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4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장에서 사용중인 타워크레인의 임대 업체에 산업안전공단에서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가 있어 그에게 자체검사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그에게 자체검사를 받을 경우 인정이 되는지, 혹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A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자체검사를 실시(위반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하여야만 하는 기계·기구이며, 이 경우 자체검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한 자체검사 자격이 있는 자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귀 분과 같이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자체검사원 양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자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면 자체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